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
(제2차 교육위원회)  
2017. 12. 1. 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 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최광주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 : 이숙애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## 3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 조례」에 따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4. 주요내용

- 목적,정의,적용대상,교육감의 책무,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제1장 총칙으로 규정(안 제1조~제8조)
- 사이버음란물 차단,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차단,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, 사생활침해 방지, 안내문구 표시, 설치통계시스템, 지원중단조건 등의 신설 및 자구를 보완하여 제2장 정보화역기능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(안 제9조 ~제15조)
- 지원대상 확대, 컴퓨터 등의 지원, 인터넷사업자 변경, 설치통계시스템 활용을 통한 지원제한 등의 제3장 교육정보화 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규정(안 제16조~제19조)
- 제4장 최우수 물품 선정을 위한 기술개발촉진, 계약정보의 공개, 최우수 물품 평가방법, BMT 준수사항, 업무·예산의 경감, 검증·제출서류 등을 규정함(안 제20조~제26조)

## 5. 검토의견

- 이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최우수 제품 선정에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등 관련 법률과 위임행정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품질성능 평가시험 결과를 우선 반영하는 정량평가를 최대화하고,
- 정보화 지원 대상 확대와 법률에서 정한 학습목적 외에 사용되는 인터넷의 지원을 중단 시켜, 법률의 준수와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